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내과 진료부장 박선수



알콜과 간질환

우리나라 성인의 알콜리즘 빈도는 22%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알콜남용이 12%, 알콜의존이 9.9%에 이른다. 남녀비는 약 20대1로 남자가 우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도가 증가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특히 알콜남용의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폭음, 불규칙한 음주 관행,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알콜 10g에 해당하는 술의 양은 40% 위스키 25ml, 25% 소주 40ml, 12% 포도주 85ml, 맥주 250ml이다. 알콜성 간경변은 매일 80g이상의 술을 10년 이상 마시면 생길 수 있으며 개인차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에서는 1일 40g, 여자에서는 1일 20g 이하의 음주량은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술에 의한 간손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술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섭취한 알콜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또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 및 기왕의 B형 C형 간염이 있는 경우가 술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알콜음에 의한 간질환은 지방간(fatty liver), 간염(alcoholic hepatitis), 간경변(alcoholic cirrhosis) 등 3개의 조직학적 병기로 나뉜다. ①지방간의 조직소견상 간세포내에 많은 지방의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간질환으로서 가벼운 경우와 심한 경우로 나뉜다. 예후는 양호하여 알콜을 끊고 영양부족 등을 교정하면 1-6주 이내에 간세포내의 지방이 소실된다. ②알콜성 간염은 비록 가역적이지만 지방간보다 임상양상이 심각하며 간경변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알콜성 간염환자의 7년간 생존율을 보면, 금주한 환자인 경우에는 8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계속 술을 마신 환자인 경우에는 50%의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③알콜성 간염이 심해져서 간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왔을 때 이를 간경변이라고 하며, 간경변환자에게는 합병증인 복수, 자발성 복막염, 간신증후군, 간성 뇌증, 간세포암, 정맥류의 출혈 등이 나타난다. 알콜성 간경변환자중 술을 끊은 경우에는 5년간 생존율이 50~75%인데 비하여 계속 술을 마신 경우에는 40% 이하로 나타났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콜을 끊고 금주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금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환자들이 자신의 음주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에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음주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 분위기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인데 금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의료진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알콜성 간염의 치료에는 비타민(vitamin)제제를 포함한 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요구되며 각 합병증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미 진행된 간경변의 치료법에는 알콜섭취 제한, 부족한 영양분 보충, 간경변에 대한 내과적 대응요법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알콜성 간질환에 의한 사회적 생산성 및 환자의 삶과 생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하며 금주 또는 절주를 포함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의: 포천의료원(031-539-9114)

여·성·상·식

경기가정·성상담센터 이분환



Q 결혼하고 몇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리도 규칙인데 혹 남성 불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A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불임이란 외형상 건강한 젊은 남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1년간 지속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정의하였으며 남성불임은 불임의 원인을 남성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불임의 원인 중 1/3은 남자에게, 1/3은 여자에게, 1/3은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 이유는 모든 신체적 질환과 건강 상태 전반이 불임의 원인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연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불임의 원인들로는 각종 호르몬의 결핍증후군/염색체질 환/유전적 질환/고환발달장애 정계정액 형성/항정자항체 형성(유행성이하선염성 고환염, 결핵성고환염, 매독성 고환염) 성생활장애(발기부전, 지루증) 등이 있습니다. 정액검사는 남성불임검사중 기본적인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주의할 점은 단 한번의 검사결과로 환자의 정액 상태를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정액이 체외로 나오는 여건과 과정은 변수가 많아서 결과가 항상 일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3번정도 시행 후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5일간의 금욕기간을 거친 후 1주 이상 3주 미만의 간격을 두고 최소 2회 이상 검사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합니다. 그 외의 검사로는 고환초음파검사, 내분비검사, 음낭초음파검사가 있다. 정액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남자의 75%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원인적 치료를 시도하며, 체외수정이나 보조생식술은 비용과 성공률등을 고려하여 이차적으로 선택합니다. 불임이 내분비질환, 간질환 등 정신적 질환과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하고 알콜, 흡연, 고환에 특성이 있는 각종 약물, 습관적인 사우나욕은 피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만 하지마시고 두 분다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경기가정·성상담센터(031-542-3171)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출·퇴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개념으로 보아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요?

A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을 말하며,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중 재해에 대한 심사결정 사례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보면, 첫째 돌발적이고 예측할수 없는 사업주의 비상호출에 따른 출근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 재해가 발생하여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중 재해의 경우 통상의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시간 외에 사전 예고되지 않은 돌발적이고 예측 할 수 없는 사업주의 비상호출에 따른 출근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 재해가 발생하여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중립노동법인합동사무소(031-877-7582/3)

세 무 상 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부동산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보유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보유기간을 따져보고 처분 시기를 결정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분당등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을 채우기 위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잔금지급시기를 늦추어 보유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최저 9%에서 36% 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을, 1년 미만이면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됩니다. 3년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의 공제를 받게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매각 시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외의 부동산을 부득이 매각하려면 아파트 기준시거나 토지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각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의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외의 부동산은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되기 전에 매각하는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6월 30일, 기준시가는 7월1일에 고시하는데 가격 급등지역은 수시로 고시하게 됩니다. \*문의: 공인회계사 송관수 (02-404-9944)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



Q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국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국내거주자가 외국소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한민국 국적보유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한 지역의 토지취득은 계약체결일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그러나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문의: 박문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한의학박사 김홍순



허리가 아프세요?

요통은 인류의 직업 보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두번쯤 경험하는 질환이다. 척추는 위로부터 경추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추는 전만(앞으로 C자형커브), 흉추(등)는 후만, 요추는 전만, 의 형태로 적당한 각도를 가지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팔다리 및 머리에서 오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충격에 대해 흡수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뻣뻣하거나 흰 척추는 요통을 유발하기도 하며 골반을

뒤 틀리게 할수도 있다. 한의학적으로 허리는 신(腎)의 부(府)라 하여 신장에 배속시켜서 허리의 질병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통은 신허(腎虛)한 상태에서 외상을 입거나, 허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풍한습열(風寒濕熱)의 병사(病邪)가 허리에 침입하여 발생한다. 현대의학에서 요통은 크게 골격 및 근육의 이상, 골반 및 복부의 이상, 자세불량 및 심인성 요통 등으로 구별한다. 임상에서 요통으로 환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요부염좌, 요부인대이상, 요부터박손상, 요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요부협착증, 요추전방전위증, 요추골다공증, 요추관절염 등

의 병명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방에서는 이를 한방적 원인에 따라 다음의 형태로 분류하여 변증치료한다. 즉, 학자에 따라 10종요통으로 나누어 치료하나 임상상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 코치 한다. 좌설요통(擗擗腰痛): 외상성 요통으로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자세이상으로 인해 허리에 열좌상이 발생한 경우로, 일을 많이 하는 젊은층에서 주로 호소한다. 10일이 경과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한다. 허리부위의 손상처에 부항을 하면 빨리 낫는 예가 종종있다. 치료는 아픈부위의 순환을 개선시키는 독활탕(獨活湯)을 사용한다. 어혈요통(瘀血腰痛):타박이나 추락,교통사고 등으로 허리부위에 손상을 입어서 골신이 불리하고, 통증이 고정적이며 밤에 많이 아픈 특징이 있다. 오래되어도 어혈을 먼저 제거 해주어야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사고나 외상의 후유증환자에 많으며 치료는 어혈을 제거하는 당귀수산(當歸瀉散)계통을 사용한다. (다음호 계속) \*문의:포천한의원(031-535-2536)

자연과 함께하는 옷닭 전문점 '밤나무집'

양질의 재료사용으로 독특한 맛을 제공합니다.



메뉴	
평만두국	5,000
닭도리탕	25,000
토끼탕	35,000
황기 닭백숙	30,000
옷닭백숙	30,000
임나무 닭백숙	30,000
평사브사브	45,000

“친절과 정성음  
다해 모시겠습니다”  
주 소 : 포천시 소흘읍 고모2리 714-1  
전 화 : 031-543-4561 산지 권석호  
핸드폰 : 011-762-7660